

30.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
- 상정일자 :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9월 21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어린이회관에 대해 리모델링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징수,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「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」로 변경
- 조례의 목적과 어린이회관 위치 등을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어린이회관 시설 및 기능을 규정(안 제3조)
- 어린이회관 개관·휴관 및 운영시간 사항에 대해 규정(안 제4조)

- 어린이회관 이용 제한, 이용료,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
(안 제5조~제7조)
- 어린이회관 사용허가, 사용시간,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
(안 제8조~제10조)
- 어린이회관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)
- 어린이회관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2조)
- 어린이회관 사무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3조)
- 어린이회관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4조)
- 어린이회관 수익사업과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
(안 제15조~제1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조례의 제명을 「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」에서 「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어린이회관 위치 및 명칭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는 어린이회관의 시설 범위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는 어린이회관의 개관·휴관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어린이회관 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
- 안 제8조는 어린이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와 제10조는 어린이회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,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는 어린이회관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회관 사용자의 시설·설비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3조는 어린이회관 사무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4조에서는 어린이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5조는 어린이회관 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16조는 어린이회관 유지관리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## □ 검토결과

- 어린이회관은 1983년 개관된 이후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 등으로 점차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음으로써 리모델링 및 운영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어린이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, 2018년부터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, 2023년 4월에 준공 완료 예정임.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징수, 전문기관 관리위탁 운영, 수익사업 및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어린이회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, 이를 위해 민간어린이놀이시설에 비해서는 저렴하고, 타시도 위탁운영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료와는 비슷한 수준인 1인당 이용료 4,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어린이회관이 대구대표 가족친화적 복합 어린이시설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며,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회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, 어린이회관이 민간놀이시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겠으며,
- 어린이회관 위탁운영 추진 시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, 위탁운영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어린이회관 이용료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이용률이 낮아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는데, 이용료 유료화 부분에 대해 개관 이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.</p>	<p>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, 개관 이전의 시운전 단계부터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시설 유료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임.</p>
<p>이용료 부분에서 단체이용의 경우 어린이 7명당 인솔성인 1명에 대해 입장요금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,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며,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</p>	<p>단체이용 인솔성인 무료기준은 타시도 사례 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, 적정여부는 시설 운영을 통해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음.</p>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